

사회적경제 영역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분석: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적용*

김태영**

최근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장과 관련하여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이들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어떤 일을,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가?' 라는 연구 질문을 던지고, 이를 밝히기 위해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Strauss와 Corbin의 코딩 패러다임 모형을 활용하여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을 분석하며, 그 활동 또는 역할 수행의 원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지원조직이 마주치는 이슈와 문제점, 그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의 대응, 그리고 그 대응에 따른 결과를 밝혀냈다. 본 논문의 주요 발견사항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의 다양한 모습은 중간지원조직 활동가의 지향가치와,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요인, 중간지원조직의 특성, 그리고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의 주요 발견사항에 근거하여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광역단위, 근거이론 연구방법, Strauss와 Corbin의 코딩 패러다임 모형

I. 서론

최근 사회적경제 영역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학계, 현장, 공공부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을 바탕으로

* 이 연구는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 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시민사회, 비영리·비정부조직, 사회적경제 등이다(E-mail: tkim@uos.ac.kr).

등장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물론 자활,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적박하여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조례의 정비를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직·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방식은 행정업무량의 증가, 효과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성 저하 등에 있어서의 문제가 제기되는 반면,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정부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논의가 전개됨에 따라,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을 직접 설립하거나 또는 민간 중간지원조직을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학계 또는 현장에서의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에 관한 논의와 중간지원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는 적지 않다(조상미·박규범, 2015; 오내원, 2010; 이기태·하현상, 2016; 이강익, 2012, 마상진, 2011 등).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대체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단편적인 대안제시에 그치고 있을 뿐(이강익, 2102, 마상진, 2011, 지역재단, 2011 등)이어서, 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부족해 과연 제안대로 하면 중간지원조직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중간지원조직은 그 사업수행에 있어 중앙부처의 유사한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사업을 갈때기 형태로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유사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주장하거나, 또는 정부사업의 위탁수행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과 문제제기 등은 왜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지, 왜 네트워크 형성이 어려운지 등 현재의 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함께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안의 작동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중간지원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들은 문제의 원인, 실태, 대안의 모색 등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를 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특히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의 현실적 역할 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경제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영역은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나 중앙정부가 사회적경제 현상과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사회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반면, 현재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경제 현장과 행정은 아직 그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의 제도화는 중앙 차원

에서 최초로 중간지원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연원하며,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권역별 중간지원조직의 지정에서 출발한다. 이는 아직 기초 차원의 중간지원조직의 수와 역량이 부족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육성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사회적기업을 넘어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으로 중앙정부의 부처별로 사회적경제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광역단위에서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도 확대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에 기반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 밀착형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달리 말해, 현실적 필요성 또는 당위성을 근간으로 활동하는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중앙정부 및 광역 차원의 확장된 사회적경제 육성,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그리고 기초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의 육성 등의 복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장과 발전에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이 실제 ‘어떤 일을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과 역할 수행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며, 연구과제에 대해 하나의 이론적 체계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달리말해, 본 연구는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통해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활동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 이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활동의 조건 등에 대한 현실적인 함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조직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택한 근거이론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에 대해 서술한다. 4장은 본 연구의 핵심으로서 2장에서 서술하는 Strauss와 Corbin의 코딩 패러다임 모형의 6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이 ‘어떤 일을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며, 최종적으로 통합된 스토리 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의 함의를 도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의 연구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II. 사회적경제와 중간지원조직

1.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경제는 종종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경제로서의 연대의 경제, 협력의 경제, 호혜의 경제로 이해된다(엄형식, 2008; Caille et.al, 2003, 김신양 편역, 2005). 이러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에는 첫째, 최근의 실업·빈곤·양극화 현상 등의 경제적 위기가 세계화로 대변되는 시장경제 체제의 오류에 기인한다는 인식과 함께 둘째, 19세기 유럽에서의 시장경제 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원래 사회 속에 배태된(embedded) 경제가 어떻게 사회와 괴리되고 자유로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끼쳤는지를 설명한 Polanyi의 주장을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대안모색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 삼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¹⁾

사회적경제에 대해 합의된 개념적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라고 개념화할 수 있는 ‘현상’은 존재하지만 현상이 일어나는 국가와 사회의 상황과 그 안에 내재된 전통과 가치관등, 가치를 지향하는 실천 방식,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정향이 서로 다름에 따라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 ‘현상’과 유사한 현상을 개념화한 용어들이 존재한다. 크게 보아 시민사회, 제3섹터, 자발적 부문, 비영리섹터 등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유사개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²⁾ 사회적경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면

1) Polanyi에 따르면 사람들의 경제(economy)는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물적 재화를 소유하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위치, 사회적 이해, 그리고 사회적 자산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며, 물적 재화가 오직 그러한 사회적 관계 유지에 기여할 때에만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Polanyi, 1944: 46).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 또는 시장사회(market society)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물적 재화의 생산과 분배가 대칭성(symmetry)에 기반한 호혜성(reciprocity)과 중심성(centricity)에 기초한 재분배(redistribution)의 원리, 그리고 이익(gain)이 아닌 사용(use)하기 위한 자급자족(autarchy)의 가계(householding)의 원리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Polanyi, 1944: 47-55). 그러나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특히 자율규제적 시장경제(self-regulating market economy)는 사회를 경제영역과 정치영역으로 분리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사회는 이러한 자율규제적 시장경제 체제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것이다(Polanyi, 1944: 71-76).

2) ‘왜 지금’ 인가라는 질문은 자칫 사회적경제 현상이 지금 처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그런 의미는 아니다. 즉 사회적경제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이것이 왜 지금 다시 주목을 받는가 라는 의미이다. 굳이 왜 지금 ‘다시’라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은 본 논문의 목적이 사회적경제의 역사성에 대한 탐구에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서술을 피하고자 하기

서 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개념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경제는 기존의 유사개념과 ‘사회성’ 측면은 공유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의 유사개념들이 경제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기존의 유사개념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계층들을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제적 삶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통적으로 시장경제체제는 경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그 역할수행의 과정에서 경제위기계층층들이 소외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셋째, 복지국가의 위기이다. 경제위기계층층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복지국가로 나타났으나, 국가경제의 위기와 재정축소는 복지국가의 축소로 이어져 그 결과 역시 경제위기계층층의 삶의 질의 악화로 나타났다. 넷째, 경제위기계층층의 삶에 눈을 맞추고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 경제행위에 근거하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 방식과 성과에 대한 재발견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제위기계층층의 삶 즉 이들의 경제를 위해 노력해온 기존의 주체들의 한계에 대한 인식의 통합과 함께 경제위기계층층을 위한 민간영역의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방식 즉 새로운 대안경제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실천이 지금의 사회적경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회적경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보면, 사회적경제는 민간영역의 자발성을 중심으로 호혜와 협력정신을 통해 사회의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모든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 앞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조례를 2012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충청남도과 그에 이은 경기도(2015)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회적경제를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

때문이다.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뿌리와 발전과정에 관해서는 엄형식(2008: 39-62)과 장원봉(2006: 24-30)을 참조할 것.

- 3)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들은 사회적경제를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유승민 의원 안)”,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

그러나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경제를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념의 확장성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실천적 함의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대안경제로서의 연대 경제(solidarity economy)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3섹터를 시장경제 체제의 대안으로 간주하는데 부정적이다. 제3섹터가 개인주의에 기반하고 있고, 이윤창출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 등을 배제하고 있으며, 대안경제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보다는 자선적 의미를 중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Caille et.al, 2003, 김신양 편역, 2005: 14). 따라서 협동조합의 전통을 강조하는 연대경제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 가운데 일부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제외해야 하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에는 협동조합의 전통을 인정하는 유럽형의 사회적기업과 이익 재분배 금지 즉 비영리성을 강조하는 미국형의 사회적기업이 존재하는데(Kerlin, 2006), 후자를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체성을 강조한 연대경제론자들의 제3섹터의 개인주의적 성향에 대한 비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2섹터)-시장(1섹터)-시민사회(3섹터)의 구분에서 출발하는 제3섹터에는 국가의 권력과 시장의 힘으로 부터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영역에서 정치·경제·사회 활동을 하는 (개인주의적일 수도 있고, 공동체주의적일 수도 있는) 시민들의 풀뿌리 조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가 자선을 지향하기로 하지 않음은 분명하나, 연대경제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제3섹터의 일부인 자선사업을 하는 비영리조직이 후원금 또는 회비 등 재정부족의 이유로 수익사업을 병행하며, 나아가 상업화(commercialize)하는(Frumkin, 2002: 144-160), 즉 사회적기업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애써 외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경제를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협의로 인식하는 연대경제론자들의 주장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측면에서의 실천적 함의도 있어 보인다. 그것은 사회적경제를 그리는 이상적 모델과 그 실천 방식에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의 함의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의 모델과 방식 가운데 공동체적 모델과 실천방식의 관점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부정적 함의는 공동체적 사고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그러하지 않은 조직 간에 불화와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 전체의 성장지

는 모든 경제적 활동”(신계륜 의원 안),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구성원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유통·교환·소비하는 민간 부문의 모든 경제활동(박원석 의원 안)”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발아기를 넘어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서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경제 상황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특정의 대안경제 모델에 경도되어 이해하기 보다는,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열린 사회적경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영역은 대안경제운동의 특성도 보이는 반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경제 현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즉, 그 특성은 다수의 사회적경제 영역의 1세대들이 8,90년대 민주화운동의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공동체성 회복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진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반면(이은애, 2011:8),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영역이 정부주도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경제가 국가복지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하거나 또는 하위범주로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떠맡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장원봉·노대명, 2008; 신명호, 2008).

한국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과 그에 이은 각종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그리고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법제화와 함께,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다투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과 사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그리고 각 조직 유형의 이해당사자조직인 연합회 등이 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에 근거한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농어촌공동체회사⁴⁾ 등등의 사회적경제 조직도 존재한다.⁵⁾

4) 마을기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에 근거한 마을기업 정의를 원용하고 있다. 마을기업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마을기업 취지와 유사한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법(안), 그리고 농어촌공동체회사와 관련해서는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이준호, 2015).

5)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들은 이러한 조직들 이외에도 개별법에 근거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영업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표준사업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재활시설,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기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등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포괄하려 한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대안경제 실험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실험은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현장은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영세성, 인력의 낮은 생산성, 인건비 위주의 생산구조, 경영의 비효율성(손을출, 2014; 오내원·마상진·김광수, 2010; 배진영, 2010; 장영란, 2011)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 내부의 문제와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낮은 인지도(박해공·배은석, 2015; 권용덕·김덕주, 2011), 사회적경제 친화적 시장의 한계(조상미 등, 2012), 그리고 일반기업 및 사회적기업 간의 경쟁(이정현, 2015) 등 사회적경제 조직 외부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조직 내·외부의 문제는 개별 사회적경제의 조직 생산은 물론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육성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가 중앙과 지방의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에도 과연 그 성장과 지속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중간지원조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우려 속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2. 중간지원조직과 그 유형 및 역할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은 ‘중간조직’(intermediaries 또는 intermediary organization)이라는 위상적 특성과 ‘지원조직’(support organization)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가진 조직이다. 위상적 특성에서 보면 중간지원조직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주체 또는 조직 사이에 위치하는 제3자 조직으로서, 그 존재의 근거를 각 주체·조직의 필요성과(또는) 서로의 공유된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기능적 특성에서 보면 중간지원조직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각 주체들을 매개·연계하며, 이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중재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간지원조직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연계·매개, 조정·중재, 지원의 역할 가운데 ‘지원’ 역할에 지나친 강조가 주어지게 되면, 중간지원조직은 자신과 각 주체 간 또는 각 주체 간의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즉, 중간지원조직이 가진 능력과 자원을 통해 이것이 부족한 주체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각 주체에 대한 우월적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한 주체의 자원을 그것이 부족한 다른 주체에

게 전달하는 전달조직 또는 일방의 의지를 다른 주체에게 실현하는 대리조직(agency)으로서 성향을 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이 과연 자신과 각 주체 또는 각 주체 간의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그러지 않아도 되느냐의 여부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각 주체의 인식 또는 주체 간에 공유된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해외원조 또는 후원재단 등처럼 일방의 의지와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중간지원조직의 경우(Ashman et. al, 2011; Szanton 2003)에는 균형성이 굳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어떤 특정 주체의 필요성보다 다수의 주체들의 이해가 관련된 사안이거나 또는 어떤 일의 결과물 못지 않게 그 결과물을 이루어 내는 과정에서 일어나야 할 것들이 더 중요한 중간지원조직의 경우(Howells, 2006; Klerkx and Leeuwis, 2007; Brown and Kalegaonkar, 2002)는 균형성에 대한 강조가 보다 더 필요해 보인다. 본 논문의 주제인 사회적경제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은 다수의 주체 즉 이해관계자 속에서 활동한다. 또한 중간지원조직 활동의 과정에 얻어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재확인, 협력의 효과에 대한 학습, 사회적 자본의 형성 등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목표 달성과 함께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장과 지속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은 균형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중간지원조직의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다양한 능력과 자원을 가진 개별 조직체들이 제3자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이해관계자들을 연계·매개, 조정·중재, 그리고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식·비공식 조직은 모두 중간지원조직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역시 중간지원조직을 매우 폭 넓게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은 지원대상, 설립주체와 운영주체, 그리고 지역적 활동범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먼저, 중간지원조직은 그 지원대상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관련 중간지원조직들이 존재한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장과 지속성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중간지원조직들은 사회적경제의 세부 영역, 즉 크게 보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또한 이 세 영역에 관한 법률과 담당 중앙부처가 서로 다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그리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육성지침을 작성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세부영역별 중간지원조직들을 통합하려는 변화가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의 세 가지 세부영역이 모두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담론이 확산됨에 따라 통합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여, 중앙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처음에는 사회적기업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으로 활동하였으나, 이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아우르는 통합중간지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관련법의 미비로 인해 마을기업 영역은 진흥원이 여전히 관여하지 않고 있다.

둘째,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을 설립주체와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수원, 성남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시·군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 같은 ‘공설공영’ 유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의해 권역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조직으로 지정된 경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은 ‘사업공공위탁’ 유형⁶⁾, 역시 진흥원에 의해 통합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사)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사업민간위탁’ 유형, 경기도가 설립하고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따복공동체지원센터와 같은 ‘공설민영’ 유형, 대전의 풀뿌리사람들과 최근에 설립된 충남의 사회적협동조합인 공동체 세움과 같이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민설민영’ 유형, 그리고 강원도 사회적기업의 연합체인 강원도 사회적기업협의회 부설로 있는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⁷⁾와 같은 ‘민관협치’ 유형 등이 그것이다. 또한 아직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민간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민민위탁’ 유형, 민간이 설립하고 정부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민설공영’ 유형 등도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적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중간지원조직, 광역중간지원조직, 그리고 기초중간지원조직 등으로 유형화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형의 중간지원조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민간영역에서 만들고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함께일하는재단 등을 들 수 있다. 광역형의 중간지원조직으로는 진흥원에 의해 매년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는 15개의 중간지원조직과 광역시도가 선정하는 광역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진흥원이나 광역시도에 의해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지 않

6) 이 같은 경우는 지역차원에서 보면 공설공영 유형이라고 할 수도 있다.

7)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처음 강원도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2016년 7월 독립법인화 하였다.

은 광역형의 중간지원조직이 있다. 기초중간지원조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주도에 의한 시·군·구 중간지원조직들과 민간영역에서 설립·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간지원조직들은 그 설립과 활동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에 설립된 충북의 (사)사람과 경제는 두 달 후 충청북도에 의해 광역중간지원조직으로 선정되었고, 2014년 7월에 설립된 (사)시민과대안연구소는 바로 이듬해 1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의해 대구·경북권의 광역중간지원조직으로 선정되었다. 2012년 8월에 활동을 시작한 강원도 풀뿌리지원센터는 이듬해 1월 강원도의 마을기업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활동하다가 2014년 1월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개칭한 후 같은 달에 진흥원에 의해 강원도권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경제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수행하는 대체적인 역할은 중앙정부 차원의 유일한 중간지원조직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진흥원은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원,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진흥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한 사회적기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교육훈련 실시 등의 업무도 수행하며, 그 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심사지원과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또한 법령상 진흥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거나 그들에게 위임된 기능을 넘어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하는 역할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 제언의 기능이다.

3. 사회적경제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선행 연구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와 활동을 점검하면서 나타난 문제들을 밝히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유형(예를 들어, 조상미·박규범(2015), 오내원(2010) 등 참조), 둘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설정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중

간지원조직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유형(예를 들어, 이자성(2011), 엄형식·마상진·이동필(2011), 정수화·이한주·이화진(2011), 제주발전연구원(2012) 등 참조), 셋째,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대한 사례비교연구 유형(예를 들어, 이기태·하현상(2016), 박세훈(2015), 오단이·정무성(2015), 김재선(2012) 등 참조), 그리고 넷째, 중간지원조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유형(이강익(2012), 마상진(2011), 서정민(2011), 지역재단(2011) 등 참조) 등이 그것이다. 이 글의 연구목적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 분석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유형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기존의 사례연구들을 비교하여 보면, 김재선(2012)과 오단이·정무성(2015)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사례연구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마을기업 또는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사례비교연구이다. 연구대상지역으로 구분하여 보면, 박세훈(2016)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는 모두 기초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사례연구이다. 박세훈의 연구는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도 연구대상에 포함하고는 있으나, 이를 기초단위의 중간지원조직과 구분하여 사례를 비교하지는 않고 있다. 위의 사례연구들이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발견한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간지원조직은 강한 정책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사회기반과 혁신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박세훈, 2015). 둘째, 민간주도의 중간지원조직이 관주도의 중간지원조직보다 전문성, 공동체 지향성,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연결자, 촉진자, 조정자, 방향제시자의 역할에서 우수하였다(이차희·탁영란·김민서·손용훈(2014)). 셋째, 도시형 중간지원조직과 농촌형 중간지원조직 모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그 지향점이 서로 차이가 있었다. 도시형은 공동체의 내적결속을 지향한 반면, 농촌형은 마을 간의 공동체익을 강화하고자 하였다(이기태·하현상, 2016). 넷째, 현장의 사회적기업가들은 중개자, 역량구축자, 그리고 조정자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중시하며, 또한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었고, 정부의 관리대행기관형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오단이·정무성, 2015). 다섯째, 민간단체를 모범인으로 출발한 중간지원조직은 자립적 운영과 지원의 이중적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제약이 있으며, 사회적경제를 키우기 위한 핵심은 인재발굴과 훈련에 있다고 생각한다(김재선, 2012).

선행연구가 공통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서정민, 2011; 마상진, 2011; 지역재단, 2011). 첫째, 재정자립도의 취약, 둘째, 전문성과 전문인력 부족, 셋째, 현장의 다양한 요구의 수용과 지원의 한계, 넷째, 중간지원조직 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크와 협력관계 부족, 다섯째,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에 의존하여 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간의 수직적 관계 또는 정부대행사업기관으로 비춰지는 등의 정체성 문제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향으로는, 첫째, 주민중심의 통합적, 현장위주의 관점과 현장중심의 지역차원 사업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둘째, 훈련된 활동가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특수성 고려, 셋째, 종합적 기능이 아닌 기능별·분야별로 전문화된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 넷째, 독자적 사업모델과 다양한 재원구조 마련, 다섯째, 중앙·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 간의 역할분담체계 구축, 여섯째, 다양한 정부차원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통합, 일곱째,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이강익 (2012, 마상진 (2011, 지역재단, 2011).

이상의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중간지원조직은 그 역사성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과를 내며 경험을 축적하고 진화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현장에서의 문제, 중간지원조직 내부 역량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경제 성장과정에서의 행정주도적 성향 등으로 인해 아직 더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중앙·광역·기초 단위에서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분담체계의 구축을 요구하는 연구들과 현장에서 목소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영역은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나 중앙정부가 사회적경제 현상과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사회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반면, 현재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현장과 행정은 아직 그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근거이론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간지원조직들은 그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검토

하면서, 초기의 궁금함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귀착되었다. 이런 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거나 설명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이 있을 수 있다.⁸⁾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아직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부족하여 이들의 활동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또한 무엇보다도 사회적경제 영역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그러한 인식의 차이가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이 현상을 인식하고 대응하며 활동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의 경험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근거이론적 연구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즉, 달리 말하면, 인식과 대응이라는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자들의 경험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그 안에서 출현하는 새로운 이론 또는 설명체계를 제시하고자 하는 근거이론적 연구방법의 지향과 장점이,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가들의 인식과 대응이라는 경험 자료를 바탕으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아 이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근거이론 연구방법⁹⁾은 크게 Glaser의 실증주의적 방법, Srauss 와 Corbin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방법, 그리고 Charmaz의 구성주의적 방법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으나(이영철, 2013: 190-200),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적용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현상을 연구한 학자들은 축 코딩과 코딩 패러다임을 제시한 Strauss와 Corbin의 연구방법을 많이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축 코딩이나 코딩 패러다임이 이론을 강제¹⁰⁾하는 것이라기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

8)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취하지 않는 연구방법으로,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하고, 이들의 다양한 활동(일, 프로그램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설정한 후, 이들에 대한 1차 또는 2차 자료를 수집하여 각 요인과 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계량적 연구방법을 취하거나 또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써 특정 사례를 깊이 있고 풍부한 서술(thick and rich description)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연구방법도 할 수도 있겠다.

9)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학자들에 따라 근거이론, 근거이론 방법,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 우나, 여기서는 근거이론 연구방법으로 통칭한다(이영철, 2014 참조). 최근 행정학계를 비롯한 사회과학계에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최홍석·홍성만·주경일(2003); 권선필(2006); 한승주(2010); 유민봉·심형인(2011); 김태한·정홍상(2012); 이영범·박성우·남승연·정무원(2012); 이석민·원시연(2012); 이도희·김현미(2013); 조원혁(2013); 윤건수(2013); 기영화·김승현·김남숙(2013); 허준영·권민영·조원혁(2015) 등 참조)

10)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Glaser와 Strauss의 공동연구(Glaser and Strauss, 1967)에서 시작되었으나 둘은 이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연구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들의 차이점은, Glaser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 사용의 논리(예를 들어, 왜냐하면, 그래서, 때문에, 그때 등등)에 주목하고 있음으로써, 이를 통해 이론의 출현을 도와주는 시각을 제시하는 하나의 분석적 도구(Strauss and Corbin, 1998: 128)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입장을 취하는 Strauss의 연구방법을 따르고자 한다.¹¹⁾

2. Strauss 와 Corbin의 근거이론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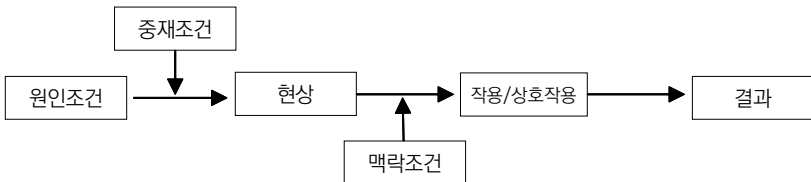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인터뷰, 문헌 등 다양한 자료를 해체, 즉 개방하는 작업(open coding)을 시작으로 자료에 내재한 사건, 이야기, 행동 등 중요하다 인식되는 현상을 개념화한다(Strauss and Corbin, 2014: 103). 이러한 자료의 해체를 통해 충분한 개념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현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 일단의 개념들을 보다 추상적인 상위차원으로 묶는 작업을 시행한다. 이것이 두 번째 범주화(categorizing) 작업 단계이다(Strauss and Corbin, 2014: 113-119). 범주화 작업이 이루어지면 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 즉 범주의 특성과 변이정도 및 패턴을 밝힐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주화는 각 범주가 언제, 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하위범주(subcategory)로 세분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자로 하여금 보다 세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축코딩(axial coding)으로, 이는 개방코딩을 통해 해체되었던 자료들을 재정립하여 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범주들을 각각의 하위범주들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단계이다. 이때 연구자는 범주와 범주, 범주와 하위범주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예를 들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가 자신의 저작(1992)에 ‘출현 대 강제(emergence vs Forcing)’라는 부제를 붙이며 강조한 것처럼, Glaser가 보기에 자신의 근거이론 방법은 근거가 되는 자료로부터 이론이 저절로 출현되기를 기다리는 반면, Strauss가 제안한 축 코딩(axial coding)과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은 연구자로 하여금 이론의 출현을 기다리기보다 강제하게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Glaser, 1992, 김인숙·장혜경(역), 2014: 187-192).

11) 본 연구가 Charmaz(2014)의 방법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방법론의 핵심인 사회적 실재에 대한 구성주의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자는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얻을 때, 가능한 한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드리려 하고, 연구대상자들과 본 연구자가 함께 그 이야기의 실재가 무엇일지에 대한 구성(construct)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할 때에도 연구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대상자(예를 들어, 정부관계자, 이해관계집단 등등)들을 포함하지 않고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가들만을 인터뷰 하는 것에 그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왜, 그래서 어떤 결과 등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는데, 이는 어떤 현상의 조건적 맥락(conditional context)을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Strauss and Corbin, 2014: 127). 이때 Strauss와 Corbin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조건들(conditions)을 구조(structure)라 하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와 이슈에 대해 연구대상자 또는 집단들이 반응(작용/상호작용)하는 과정(process)을 밝히고자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러한 구조와 과정을 통합하는데 도움을 주는 패러다임, 즉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을 제시한다. 코딩 패러다임의 주요 요소로 첫째, 현상(phenomenon), 즉 범주, 둘째, 조건(conditions), 셋째, 어떤 상황, 문제, 이슈 등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대응, 즉 작용과 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그리고 넷째, 그러한 작용/상호작용의 결과(consequences)를 제안하고 있다(Strauss and Corbin, 2014: 127-135). 또한 Strauss와 Corbin은 조건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상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조건(causal conditions), 둘째, 원인조건이 현상에 끼치는 영향을 완화하거나 변화시키는 중재조건(intervening conditions), 그리고 셋째,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나타나 연구대상자들의 작용/상호작용을 낳게 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의 집합인 맥락조건(contextual conditions)이 그것이다(Strauss and Corbin, 2014: 131-132). 이상의 Strauss와 Corbin의 코딩 패러다임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 Strauss and Corbin의 코딩 패러다임



이처럼 Strauss와 Corbin의 코딩 패러다임을 도식화 하였으나, 코딩 패러다임의 각 요소들의 관계가 그림의 화살표처럼 일방향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하면, 원인조건이나 중재조건이 거시적 조건일 경우 이들은 맥락조건, 작용/상호작용, 그리고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작용/반작용 역시 현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마지막 단계는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이다(Strauss and Corbin, 2014: 143-148). 이 단계는 연구자의 통찰이 특히 많이 요구되는 단계이다. 왜냐하면, 축코딩 단계에서는 어떤 현상별

로, 즉 하나의 범주를 중심으로 특정 코딩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수는 있으나 이 특정 패러다임이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주된 과제를 통합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코딩 단계에서의 첫 단추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발견된 주요 범주들을 통합할 수 있는 핵심현상(central phenomenon)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범주들을 통합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법으로는 스토리 라인 작성이나 그림(diagram) 등이 종종 활용된다. 이러한 선택코딩의 통합의 단계를 거치면서 연구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틀(theoretical scheme)과 그에 따른 다양한 가설적 언명이 제안될 수 있으며, 정교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새로운 이론의 출현이 가능할 수도 있다.

3. 연구대상의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의 수는 알 수 없다. 그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경기도의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이하에서 따복이라 칭함), 충남의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에서는 충남넷이라 칭함), 충남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사경센터라 칭함), 그리고 충남의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이하에서 세움이라 칭함) 등 4개 조직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조직의 연혁과 현황을 꿰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대표자 각 1인씩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표 1〉 연구사례 조직과 인터뷰 대상자

연구사례 조직	설립운영 형태	설립 연도	주요사업	직원 수	인터뷰 대상자 직책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공설민영	2015. 2	경기도의 따복공동체사업과 사회적경제사업 통합지원	57	센터장(D)
충남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업민간 위탁	2012. 11	고용부·행자부·기재부·충남·세종시 등의 사회적경제사업 통합지원	24	상임이사(N)
충남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공설공영	2011. 2	충남의 사회적경제사업 통합지원	4	(전)센터장(C)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	민설민영	2015. 11	충남의 사회적경제사업	4	상임이사(S)

사례선정을 사례 표본추출이라고 하면 본 연구에서의 사례선정은 일반적인 계량적 연구에서 의미하는 대표적 표본추출(representative sampling)은 아니다. 네 가지 사례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대표성을 띤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사례선정은 연구자가 충남의 세 조직을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 의미에서의 편의표출(convenience sampling)이며, 의도적 표출(purposive sampling)이다. 이러한 표출은 종종 계량적 연구의 표본추출방법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네 가지 사례는 오히려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본질에 적합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본 연구자는 사전연구를 통해 사례 조직에 대해 일정 정도의 경험적 지식이 있었고, 인터뷰 대상자들과 직간접적으로 rapport가 형성되어 연구 주제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로부터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거이론에서의 표본추출은 개념과 관련한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인데, 인터뷰 대상자들과의 이러한 심층적 인터뷰는 이론적 표본추출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 심층적 인터뷰를 통해 현재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이슈로 종종 논의되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형태(예를 들어, 충사넷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민간위탁형, 따복은 공설민영형, 사경센터는 공설공영형, 세움은 민설민영형)에 관한 논란, 정부주도성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려(경기도와 충남 단체장의 정당소속의 차이와 단체장의 관심),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의 세부 분야에서의 갈등(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그리고 공통적이면서도 서로 차이성이 드러나는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따복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31일 수원의 따복 사무실에서 따복지원센터장과 2시간 40분정도, 그리고 충남의 세 중간지원조직은 2016년 6월 1일 공주의 세움 사무실에서 충사넷의 상임이사와 세움의 상임이사¹²⁾와 함께 3시간 10분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진행은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따랐고, 인터뷰 자료는 모두 1주일 이내에 녹취록으로 변환하였다.

질적연구는 자료의 수집과 해석에 있어 종종 인터뷰 대상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그대로 받아드리거나 또는 연구자의 편견이나 주관성이 개입되는 등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인터뷰 진행과정에서

12) 세움의 상임이사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직전 센터장을 역임하여, 공동체 세움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 인터뷰에 응하였으며, 세움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의견보다는 세움의 미래 활동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로 제시하였다. 아래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의 자료를 제시할 때, 따복의 센터장은 'D', 충사넷의 상임이사는 'N', 충남사경센터의 센터장은 'C' 그리고 세움의 상임이사는 'S'로 표기한다.

서 인터뷰 대상자들의 응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인터뷰 후반에 이를 다시 질문하여 응답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들의 인터뷰 내용과 연구자가 가진 다른 사전자료, 예를 들어 공식 발간자료, 인터넷 자료, 외부 인터뷰 자료 등을 다각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자료 내용의 일치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이 같은 인터뷰 과정에서의 프로빙과 다양한 자료간의 다각적 검증을 거쳐 어느 정도 자료의 신빙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 다음, 본 연구는 녹취록을 중심으로 인터뷰 자료를 해체하여 줄 단위 분석(line-by-lin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연구자가 개방 코딩과 범주화 작업을 하는 가운데 우선 유념한 것은 개념화와 범주화된 것에 이름붙이기(naming)였다. 그러나 보다 더 유념한 것은, 특히 범주화에 있어 각 범주가 더 이상의 새로운 속성이나 차원에 관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를 이루도록 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녹취록을 여러 번 독회하는 한편, 인터뷰 자료와 인터뷰 이외의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더 이상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 듯 해졌을 때 범주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는 110여개의 개념, 32개의 하위범주, 17개의 범주, 그리고 6개의 코딩 패러다임 요소를 추출하였다. 그런데, 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코딩된 자료에 이름붙이거나 범주의 이론적 포화보다 더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거쳤던 작업은 선택코딩을 염두에 둔 축코딩 작업이었다. 하위범주를 아우르는 범주를 중심으로 핵심현상을 찾고자 하였으나 하위범주를 새로이 볼 때 마다 새로운 핵심현상이 보이는데하여 이를 핵심현상으로 취하기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최종적으로 범주와 하위범주 및 범주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 보이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지향가치 실현욕구'에 주목하고, 이를 중심으로 범주들을 다시 묶어 패러다임 요소로 구분하면서 본 연구의 핵심현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지향가치 실현 욕구'라는 상대적으로 평범한 상위 범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자료의 해체, 범주화, 코딩 패러다임 요소의 추출 등의 과정은 전적으로 연구자 단독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자료의 해석과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논문의 초고가 완성된 후 인터뷰 대상자에게 해석의 오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한편, 연구사례 중간지원조직이 아닌 다른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자 1명에게 초고를 보내 읽게 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그 결과 다른 중간지원조직의 상황에서도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가 의미 있음을 확인하여 연구결과의 이전가능성을 일정 정도 확보하였다고 여겨진다. 아래에서는 코딩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Ⅳ.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적용을 통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 분석

1. 핵심현상: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지향가치 실현 욕구

본 연구에서 개방코딩을 통해 얻어진 개념들 가운데, 개념적 유사성을 가진 개념들을 묶어 보다 추상적인 범주화를 구성하였다. 핵심현상과 관련된 개념의 발견과 범주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 즉 중간지원조직의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은 사회적경제를 대안경제 운동, 사람중심 운동, 지역사회 운동으로 인식하며, 사회적경제의 핵심 요소로 소유의 사회적성, 경영의 민주성, 사업의 공공성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활동가들의 이러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속에는 현재의 시장경제체제의 작동방식과는 다른 대안적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들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는 이유에는 이러한 지향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욕구가 그 저변에 깔려 있음도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향가치 실현은 궁극적으로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장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가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유사한 개념들을 한데 묶어서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장과 지속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지향가치 실현욕구”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이 실현욕구 범주는 연구참여자들이 활동가들의 지향가치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측면에서 이를 보다 명확하게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지향가치 실현욕구’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 범주가 본 연구에서 발견된 다른 범주와 하위범주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한다고 보아 이를 핵심현상으로 도출하였다. 즉, 이 범주를 핵심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현재 사회적경제 영역의 어려운 실상(다음에 서술할 코딩 패러다임의 원인조건)을 목격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은 마침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즉, 중재조건) 어려움에 봉착한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경제 영역이 성장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을 자임(핵심현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으므로, 이 범주(핵심현상)가 원인조건과 중재조건을 연결시키고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범주는 활동가가 그러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며 욕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행정과의 협조와

갈등을 겪으며(즉 맥락조건), 그에 따라 자신들의 지향가치에 비추어 중간지원조직 활동에 대한 자성과 대응전략을 구축하게 되고(즉, 작용과 상호작용), 그러한 대응의 결과로서 그들의 지향가치 실현 욕구를 고려한 중간지원조직 활동의 변화와 지속(즉 결과)이 일어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범주가 본 연구에서 발견된 범주 및 하위범주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핵심현상으로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핵심현상 속에 나타난 활동가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인터뷰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체로 공유되고 있었다.

“세상변화, 사회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대안사회운동체로서 사회적경제를 선택하고, 사회적경제를 잘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받았다”(N)

“사회적경제는 대안경제운동, 사람중심운동, 지역사회를 바꾸는 운동이다”(D)

“사회적경제 조직이 갖는 중요한 특징 있는데, 이는 소유의 사회성, 경영의 민주성, 사업의 공공성으로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지속가능성이 가능하다”(N)

“사회적경제는 자본, 경영보다 사람이 우선이다”(D)

“지역 없는 사정은 가능하지 않다”(D)

“지역주민이 생산자 소비자의 주역으로서 지역중심으로 탄탄해야 외풍이 있어도 울타리가 될 수 있다. 지역이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자본이 사회적경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장잠식에 대한 역공이 들어왔을 때 과연 사회적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D)

그런데,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은 모두 지역사회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그들 간의 지향가치, 예를 들어, 큰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느냐 또는 작은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느냐 등에서 차별성이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경제의 규모화가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CB(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D)

“사회적경제 조직이 계속 커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 전국시장을 마케팅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냐 또는 비슷한 일을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전국에 1개씩 있으며 네트워크 하자는 것이다. 그들이 지역을 더 잘 안다. 하나의 리딩 기업으로 족하지 않다”(D)

“시군은 처음 기획대로 했을 때는 분명히 사회적경제와 마을 만들기를 따로 지원 센터를 만들지 아니하고, 기본법이 생길지라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생길지라도, 이렇게 합의 하에 사회적경제와 마을만들기 통합지원형태로 가자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활동 주체에 따라 어떤 쪽은 사회적경제에 치중하고, 어떤 쪽은 마을만들기에 치중하는 현실로 나타나더라”(N)

이를 종합하면,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은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존재에 대해 공유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지향가치가 다를 경우, 향후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과정에서 차별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이 발견되었다. 위에서 서술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지향가치 실현 욕구라는 핵심현상과 관련한 개념과 범주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2〉 코딩 패러다임의 핵심현상

코딩 패러다임 요소	범주	하위범주	개념
핵심현상: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지향가치 실현 욕구	se, SE 성장과 지속성을 위한 사경 활동가의 지향가치 실현욕구	사경활동가의 사경에 대한 인식	대안경제운동, 사람중심운동, 지역사회변화운동, 소유의 사회성, 경영의 민주성, 사업의 공익성
		사경활동가의 지향가치	큰 사경 vs 작은 사경 지역중심, 주민중심, 지속가능한 공동체강화

* se: 사회적경제 조직 * SE: 사회적경제 영역, * 사경: 사회적경제

2. 원인조건: 사회적경제 시장개척과 사회적경제 영역 확장의 어려움

원인조건은 핵심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시장개척과 사회적경제 영역 확장의 어려움을 코딩 패러다임의 원인조건으로 범주화하였다. 즉 사회적경제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이 사회적경제 활동가들로 하여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을 통해 자신들이 지향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의 기저에는 사회적경제 조직 내부적으로는 적은 인력, 낮은 노동생산성과 경영능력, 작은 매출이라는 규모의 영세성과 경영의 취약성이 있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 외부로부터는 사회적경제 친화시장의 한정성과 질 낮은 제품과 서비스로 인한 낮은 시장경쟁력,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인지와 인식의 문제가 있었다.

“개별사업체 규모, 경영상태 취약, 제품서비스가 그 정돈데 누가 구매욕구가 있겠는가? 영업이익도 영업 손실을 보조금으로 보전하고 연명한다. 업종도 시장대비 과당공급품목이 많다”(N)

“사회적경제 시장은 다양하지 않다. 즉 사회적경제 친화적 시장, 예를 들어, 자원 순환, 가사 돌봄, 고용·노동통합, 사무용품 등등 대기업과 경쟁하지 않는 시장이 있는데, 수요조사 없이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다”(D)

“행정에 일반영업을 갔을 때, 사회적경제 조직을 그저 복지시설로 보는 인식이 존재했다. 즉 어려운 사업이 만드는 질 떨어지는 곳이라는 인식의 낙인이 찍힌 듯 했다”(D)

“보호받고 있는 공공조달시장 안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습인데 보호받지 못하는 민간시장 안에서는 개별 사회적경제 단위로서는 절대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N)

코딩 패러다임의 원인조건과 관련한 범주와 개념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표 3〉 코딩 패러다임의 원인조건

코딩 패러다임 요소	범주	하위범주	개념
원인조건: 사경시장개척과 사경영역 확장의 어려움	사경조직의 취약성	규모의 영세성	적은 인력, 작은 매출, 낮은 노동력
		경영의 취약성	경영의 경험과 능력 미흡
	사경시장의 미성숙	사경시장의 협소성	사경친화시장
		사경에 대한 시민의 낮은 인식	낮은 질의 제품과 서비스

3. 중재조건: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코딩 패러다임의 중재조건은 원인조건이 핵심 현상에 끼치는 영향을 완화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 의한 사회적경제의 제도화를 중재조건으로 발견하였다. 이 중재조건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정부주도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양극화, 실업의 증가, 사회적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나타난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의 관련법 제정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련 조례의 제정,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경쟁적 사회적경제 정책과 사업이 잇따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목표는 사회적경제의 질을 확보하기 보다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 일자리 창출 수, 매출액의 증가 등 양적 목표에 초점이 주어짐으로써,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그 인증조건을 느슨하게 하거나 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을 용이하게 하여, 부실한 사회적경제 조직도 함께 늘어나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양적 팽창을 가져오는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정부주도에 의한 사회적경제의 양적팽창은 정부지원의 축소 또는 중단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영역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회적경제의 제도화는,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직접 관련정책과 사업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음으로 인해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책과 사업을 펼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동가들로 하여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을 자임하게 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간지원조직이 단기간 내에 만들어지고, 이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의 양적 팽창에 따른 부작용의 문제도 해결해야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 면도 있다고 여겨진다.

사회적경제의 제도화라는 중재조건과 관련하여 본 사례연구의 대상의 하나인 경기도의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조례’와 관련이 있다. 경기도는 충남처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영역을 아우르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따로이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따복조례라 칭함)도 가지고 있다. 이 따복조례는 기존 조례인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그 안에 따복공동체위원회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관련 내용이 있다. 그런데, 위의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조례에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조항이 있으나, 2015년 10월 전문개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따복공동체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운영방향은 사회적경제 영역 가운데 마을(공동체)만들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제도화는 본 연구의 대상인 경기도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인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논의된 코딩 패러다임의 중재조건과 관련된 범주와 개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코딩 패러다임의 중재조건

코딩 패러다임 요소	범주	하위범주	개념
중재조건: 사경의 제도화	seio의 제도적 근거	중앙·광역·기초차원의 seio 설립근거 마련	se육성법, coop기본법 제정, 광역·기초 사경 관련조례 제정, 따복조례
	행정주도성	부처별 경쟁적 사경정책과 사업 지원	사회적기업, 자활, 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만들기 사업
		행정의 목표	일자리창출, 매출액, 사회적서비스제공, 사회적경제조직의 수
			느슨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협동조합설립의 용이성

* seio: 중간지원조직 * se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 coop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 따복조례: 경기도 따듯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4. 맥락조건: 사회적경제와 행정의 협조와 갈등

코딩 패러다임에서의 맥락조건은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나타나 연구대상자들의 작용과 상호작용을 낳게 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의 집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과 범주화 과정을 거쳐 나타난 중재조건을 ‘중간지원조직과 행정 간의 협조와 갈등’이라고 명명하였다. 중재조건으로 작동하는 범주로 중간지원조직의 특성, 단체장의 관심과 행정의 지원, 그리고 사업수행의 경직성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연구대상인 네 조직과 행정 간에 나타나는 협조와 갈등의 양상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먼저, 공통점은 갈등현상으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세 조직 모두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양적 성과달성의 조급성, 과다보고, 통제, 의사소통방식, 민간불신 등 행정의 관료적 습성과 위탁사업의 성과지표, 예산 재위탁 금지, 사업별 예산 통합의 어려움 등에 의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경직성에 따른 갈등이었다.

“시·군의 경우 지역형 모델을 찾기 위해 NGO와 센터가 끊임없이 토론해서 예산 만들고 사업제안하면, 그와 관계없이 광역행정에서 뺄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는 ‘도에서 이런 사업이 내려와서 우리는 여력도 없고 여건이 부족하다’며 돌아서 버리는 허망해짐이 생긴다”(D)

“성과지표가 전면적으로 바뀌어 나갈 때, 예를 들어 네트워크사업 배점은 낮았지만, 빠져나가면, 가외사업이 되어버린다”(N)

“예산의 경직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충남도와 정산할 때, ‘왜 회의하면서 커피 먹느냐? 커피마시면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차라리 회의실을 빌려라. 그게 증빙된다’ 식의 행정이다”(C)

“부처 간 유사한 것을 서로 각자하면서 정책이 만들어진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융·복합하라고 한다. 이를 구체적 사례로 말하면, 행자부가 마을기업을 하면서, 마을기업을 맨 처음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법인형태도 제한하지 않았는데, 작년 부터는 사회적기업을 할 의사가 있으면 처음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 보낼 정도다. 미쳤다. 이는 부처 간의 성과 때문인 듯하다”(N)
 “정책사업 만이라도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개별법이 있어 어렵고, 행정도 상위법이 없으니, 감사원 감사를 우려해 조레만 가지고는 움직이려하지 않는다”(D)

“전년도 사업성과분석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련 정책사업의 예산편성을 3월부터 시작하여 8월에 완료한다. 평가할 시간이 없다”(D)

“시군센터의 애로인데, 예산 재위탁이 안 된다. 관리를 광역센터가 해야 한다”(D)

반면, 중간지원조직과 행정 간의 협조 양상은 충남과 경기도의 중간지원조직 간에 온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단체장의 관심과 행정의 지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듯 보인다.

“충남도정의 비전과 핵심전략 간의 분절성이 존재한다...사회적경제를 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인식하는데 그치고 있다. 행정이 정부보완형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그대로 사회적경제를 적용한다. 그 결과 정부시책 보완형 사회적경제로 고착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N). “A지사는 처음부터 사람투자 전략 필요에 동의하고 시민사회에서 내발적 발전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회적경제를 핵심전략으로 세운 적이 없는 듯하다”(N)

“성과지표가 전에는 실국장의 성과가 사회적경제의 지표였는데, 과장으로 내렸다. A지사의 그런 모습이 공무원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낮은 관심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N)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따복의 자치에 동의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 않겠다 하며, 센터를 자랑하고 다닌다”(D)

“경기도의 경우, 실, 과, 행정팀과 일상적으로 만나 사업 하나 하나 계획을 짤 때와 집행과정에서 모두 협의한다. 지원단의 인력이 1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고, 단장의 경우도 따복 초기부터 관여하여 같이 하며 의견 공유도 잘되고 있다”(D)

그런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 간의 협조와 갈등의 요인이 되는 한편 중간지원조직

의 대응전략 즉, 작용/상호작용에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범주로 중간지원조직의 특성이 발견되었다. 그 특성은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과 운영형태 그리고 모조직의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의 대상조직인 네 조직은 모두 설립과 운영방식이 서로 다르다.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충사넷)는 민간시민단체를 기반으로 생겨나 중앙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권역별 중간지원조직으로 선정되는 한편, 충남도로부터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민간위탁 형이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사경센터)는 충남연구원의 부설센터로서 공설공영 형이다, 공동체 세움(이하 세움)은 민설민영 형이며, 경기도의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이하 따복)는 공설민영 형이다. 충사넷이나 따복과 같은 위탁형의 경우, 대리인 관계로 인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갈등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갈등의 관계가 더 나타날 수 있을 터인데, 민간시민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충사넷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보이는 관료적 습성과 사업의 경직성을 겪으며 발생하는 갈등이 잠시 후에 설명할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에 대한 자성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 반면, 따복도 마찬가지로 위탁의 형태이기는 하나, 모조직은 사회적경제 조직이며, 또한 단체장을 비롯한 행정기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과의 갈등은 기왕의 행정의 관료적 습성과 사업의 경직성에 한정되어 나타는 것으로 보인다. 공설공영 형인 사경센터는 행정의 틀과 시간 속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의 행정에 대한 불만과 갈등은 있겠으나 조직 자체로서는 주어진 역할 수행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인다. 민설민영 형인 세움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자신의 방식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향후 행정과 연계되어 일을 할 때에는 행정의 관료적 습성과 사업의 경직성의 문제에 따른 행정과의 갈등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의 관료적 습성과 사업의 경직성 속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른 행정과의 갈등을 겪기 마련이다. 그리고 위탁사업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행정과의 갈등은 위탁 그 자체보다도 모조직의 특성과 행정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의 정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코딩 패러다임의 맥락조건의 개념과 범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표 5〉 코딩 패러다임의 맥락조건

코딩 패러다임 요소	범주	하위범주	개념
맥락 조건: seio와 행정과의 협조와 갈등	seio의 특성	seio 설립 및 운영방식	공설공영 vs 공설민영 vs 사업 민간위탁 vs 민설민영 등
		seio 모조직의 특성	공공기관 vs 민간시민단체 vs 사경조직+경험
	단체장의 관심과 행정의 지원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단체장의 지지, 단체장의 관심
		담당공무원의 지원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속성, 담당 공무원의 사회적경제 이해
	사업수행의 경직 성	행정의 관료적 습성	양적 성과달성의 조급성, 과다 보고, 통제, 의사소통방식, 민간 불신
		사업의 경직성	위탁사업의 성과지표, 예산 재 위탁 금지, 사업별 예산통합 어 려움

5. 작용/상호작용: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에 대한 자성과 대응전략 구축

앞에서 살펴본 코딩 패러다임의 세 가지 조건(원인, 중재, 맥락)은 어떤 현상이 처해 있는 조건적 맥락(conditional context)이라는 측면에서 Strauss와 Corbin은 이를 구조(structure)라고 하고, 이제부터 살펴볼 코딩 패러다임의 작용/상호작용 요소는 이러한 구조 특히 맥락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 또는 이슈들에 반응하며 연구대상자가 핵심현상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를 과정(process)이라고 하고 있다 (Strauss and Corbin, 1998: 127). 종종 작용/상호작용은 행위(act)라고 간주되지만, 맥락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슈들에 대한 검토와 토론도 일어나며 ((Strauss and Corbin, 1998: 134), 이러한 검토와 토론의 과정으로 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를 새긴 본 연구에서는 코딩 패러다임의 작용/상호작용 요소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을 통해 활동가들의 지향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핵심현상에 대한 대응 행위(act)뿐 만 아니라 조건적 맥락 속에서 중간지원조직이 경험하는 주요 이슈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작용/상호작용 요소를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에 대한 자성과 대응전략구축’이라고 명명하였다. 활동에 대한 자성으로는 크게 활동에 대한 조직의 내적 자성과 조직 밖의 상황에 대한 인식 두 가지로 나타났으며, 대응전략도 이에 따라 크게 조직

내부와 관련된 역할 재정립 전략과 조직외부의 상황에 대한 실행전략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조직의 내적 자성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혼란은 사회적경제 2세대 활동가들의 지향가치 혼란의 우려, 중간지원조직의 정부·지자체의 정책수단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내부 전문성역량 축적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었다.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가고 있는가? 늘 의문이다”(N). “일하는 친구(2세대 활동가)들은 예전처럼 많은 경험도 없이 중간지원조직을 경험해본 것이다. 민간조직의 활동가인지 위탁조직의 10급 공무원인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몸에 습이 붙으면 체질개선이 어렵듯 이를 다시 위로 올리기 어렵다. 그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발전되지 않으면 사회적경제의 확장도 주춤할거다”(N)

“센터에 들어온 사람들은 5~6년의 현장경험을 가진 사회적기업, 지역활동가들로 이들은 도와 사회적경제를 연계할 사람들인데, 현재 따복에 들어와 행정과 함께 일하는 관계로 이슈 파이팅을 못하고 있다. 예전에는 کم원의 대표로서 도의원과 과의 관계에서 갑과 비슷해서 뽕뽕 지르기도 했는데, 현재 센터에 들어와서는 을이 되었다. 안에 있으니까 실행은 하겠는데 치고 나가지 못 하겠더라”(D). “정책사업에 매몰 되어 있다”(D). “돈쳐내기 바쁘다,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NGO의 강점을 발휘 못하고, 많은 예산 집행기구로 전략하지 않고 있나 할 때가 있다”(D)

“위탁을 처음부터 안 받은 것이 나왔다. 위탁사업에 매몰되기보다 조직정체성, 우린 업체다. 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일한다. 조직정체성을 세우면서 우리가 원래 하고자하는 사업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되었다”(S). “1년 위탁계약으로 무슨 전문성이 확보되나?”(N). “현장전문가로서의 역할은 수행은 할 수 있으나, 그러다 보니 코디네이터 역할 정도이다.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N). “지향목적이라는 이상과 위탁으로 인한 정책사업에의 매몰이라는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 그러한 괴리로 인해 온갖 것을 다하고 있다”(N).

조직 외부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는 첫째, 사람부족과 주민들의 의식 문제와 관련된 주민주체성 부족, 둘째,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과 차별적 전략의 부재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후순위화의 문제, 셋째,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에 따른 각개 약진과 정책사업간의 칸막이로 인한 화학적 통합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대와 협업의 불충분성이었다.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사회적경제 사업과 공동체사업인 마을사업은 주민주체, 사람이 주도가 되는 사업인데, 숨은 사람은 있는데 오픈된 사람은 없다. 도시는 사람도 있고 자원도 있는데, 농촌으로 갈수록 지역활동가가 적다”(D). “한정된 끼리끼리의 겹치기 출연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건가가 고민이다”(N). “공동체가 회복되면 안에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마을 자산화시키는 전략을 가져야 하는데, 마을주민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각 부처에서 돈이 들어오면 다 깨져버린다. 그러니 더디더라도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과정을 프로그램화하고 그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D).

“충남도 마찬가지로 양적성장하다 보니 급조된 사회적경제조직도 많다. 시장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각개전투하며 사회적경제 조직간 경쟁이 벌어진 다”(N). “사회적경제 조직이 개별 약진한다고 사회적경제 영역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 경쟁하다보면 아사리판이 될 거다”(C).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공통의 문제로 생각하기 보다는 개별 조직의 문제점으로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심사에 가보니 ‘비슷한 업종끼리 연대하면 어때요?’ 하고 질문했더니, ‘저기는 먹고 살만하니 우리를 도와 달라’ 하더라. 즉 같은 일하는 사람끼리 협업 보다는 경쟁한다”(D). “사회적경제가 큰 이름으로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기업, 자활, 협동조합 등이 존재하며, 협의회, 연대회의 등 회의라는 이름일 뿐이다. 실제 협업과 연대사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D). “연대하지 않으면 정부사업에 휘둘릴 거다”(C).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불일치한다.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보다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한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변질하여 단순기부행위, 자선행위로 전락한다. 그 결과 정부와 지자체에 의존하는 사회적기업이 많아졌다”(N). “현장에서는 개별조직이 급하다 보니 사회적보다 경제적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돈벌이 경제가 살림살이 경제로 전향을 못하고 있다”(N). “일반시장과 똑같이 사회적경제 개별조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있는 것 아닌가. 즉 따라쟁이 수준이다”(N). “사회적경제는 시장논리와는 다른 시장이다, 다른 마케팅이 필요한데 그것이 스토리텔링이다.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스토리를 팔아야 한다고 생각한다”(D). “단순히 일 자리를 창출한다. ‘우리 동네에서 만들었다’ 라는 것만 가지고는 시장개척과 확장이 불가능하다. 사회적기업의 존재이유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그것이 경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다”(D).

그런데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에 대한 자성에 있어서 충남의 충사넷과 경기도의 파북 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두 조직 모두 공통적으로 조직의 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었으나, 조직의 내적 자성 측면, 즉 조직의 정체성과 관련한 이슈는 충사넷의 경우에 두드러져 나타났다. 이는 중재조건에서의 모조직의 특성과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및 행정의 지원에 따른 두 조직 간의 차이로 여겨지는데, 두 조직의 대응전략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작용/상호작용의 대응전략으로는 역할재정립 전략과 실행전략이 있었다. 역할재정립은 충사넷과 파복의 경우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충사넷은 모조직의 고유사업과 위탁사업으로 구분한 한편, 파복은 사회적경제 사업과 공동체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실행전략으로는 크게 조직개편, 사업내용개발, 고유모델의 개발, 이해관계자 전략 등이 있었다. 충사넷과 파복 두 조직은 모두 교육, 컨설팅, 성장단계별지원, 네트워크 강화, 창업지원 등등의 사업내용개발과 시군중간지원조직의 지원, 주민리더발굴 등의 이해관계자 전략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조직개편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다만 파복의 경우 파복공동체모델이라는 고유모델을 구축하고 실행하고 있는 반면, 충사넷의 경우 지역화 모델과 협업모델을 구상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고 있었다.

“충사넷은 짧은 시기에 빨리 컸는데, 위탁사업 중심으로 전개하다 보니, 충사넷 본래 설립목적은 상실했다. 위탁사업대행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사무국과 위탁사업으로 분리하고 위탁센터는 과업중심형 사업기획을 하고, 법인은 법인설립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을 분리해서 수행한다”(N).

“일반시장, 공동시장, 타겟시장에 따라 다른 마케팅 전략, 예를 들어, 스토리만 팔거나, 스토리와 제품내용과 품질을 묶거나 해서 마케팅 방법을 다양화 한다”(D).

“도의원들이 지역활동하기는 애매한데, 지역구 행사때마다 지역구 의원을 초빙한다. 주민에 홍보도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우군화 하려한다”(D).

“마을주민들은 법, 명칭 등은 구분 안한다. 그들에게 어떤 삶, 환경을 부여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것도 관계없다. 주민이 주민주체가 되어 주민필요에 따라 직접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이 파복의 융합모델의 그림이다”(D).

이상의 코딩 패러다임의 작용/상호작용의 개념과 범주를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코딩 패러다임의 작용/상호작용

코딩 패러다임 요소	범주	하위범주	개념
작용/상호작용: seio활동에 대한 자성과 대응전략 구축	seio의 역할과 조직정체성에 대 한 혼란	사경2세대 지향가치의 혼 란	사경활동 경험의 한정성, 지침전 달형 활동가, 위탁사업의 10급 공무원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수단 화 우려	정보보완형 사경으로의 고착화 우려, 위탁사업에 매몰, 이슈 파 이팅 한계
		전문성역량 축적의 한계	지원대상 과다, 과다업무, 소역량
	주민주체성 부족	사람부족	숨은 사람 찾기, 끼리끼리, 겹치 기출연, 농촌으로 갈수록 인적자 원부족
		주민의식 부족	주민이 준비 안 된 상태에 재원유 입 시 마을공동체 파괴
	se운영의 사회 적 가치 후순위 화	지역문제해결보다 수익성 중심의 경영	se의 생존욕구, 급조된 사경조 직, 정부지자체 의존 se
		차별적 전략의 부재	따라쟁이, 스토리텔링 부족
	연대와 협업의 불충분성	각개약진	se간의 경쟁
		화학적 통합의 어려움	사경영역 간 뿌리갈등, 사업간 칸 막이
	역할재정립전략	방향설정	사업구분, 위탁사업 vs 고유사 업, 사경사업 vs 공동체사업
	실행전략	조직개편	사업별 직제 vs 팀별직제
		사업내용의 개발	교육, 컨설팅, 홍보·판로지원, 성 장단계별지원, 창업지원, 공동인 프라 구축, 네트워크 기반강화, 융복합프로그램, 생태계 조성 등
고유모델 개발		따복공동체모델(사경+공동체), 지역화모델, 협업모델	
이해관계자 전략		협의회·업종간 협업 및 역할 조 정, 시군seio와의 역할조정, 주 민리더 발굴, 우군 만들기	

6: 결과: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활동의 변화와 지속

코딩 패러다임의 마지막 요소인 결과(consequence)는 작용/상호작용에 따른 결
과를 말한다. 이를 엄밀히 해석하면, 본 연구에서의 중간지원조직의 작용/상호작용의

로 인해 중간지원조직 활동의 내·외부 대상, 즉 조직구성원,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영역,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를 밝히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그러나 위의 작용/상호작용에 관한 서술에서도 보이듯이 본 연구의 작용/상호작용으로 인해 그 대상자들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는 짧은 기간 내에 나타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엄밀성을 지키지 못한 한계를 인지하되, 대체방안을 강구하였다. 그것은 인터뷰 자료 가운데 각 중간지원조직들의 활동결과에 대한 자평을 점수화하고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 이 답들이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여겨져 이 자료를 중심으로 코딩 패러다임의 결과 요소를 정리하며, 이를 ‘중간지원조직 활동의 변화와 지속’이라고 명명하였다. 자평 점수와 관련하여 총사넛은 100점 중 51점, 따복은 70점, 사경센터는 60점을 주었고, 세움은 역할 수행의 부족으로 답하지 않았다. 총사넛은 그러한 점수 부여의 의미를 ‘과업무, 소역량, 저평가’라고 때문이라 표현하며, ‘열심히는 했으되 제대로 했는가’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따복은 70점을 부여한 이유를 자신들이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고, 이를 하였다면 80점을 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사경센터는 초기의 충남의 정책 방향설정과 정책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역할은 열심히 하였으나, 현장에서의 민간요구를 충실히 받아내지 못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재위탁을 받을 것인가 질문도 있었는데,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정립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체적인 의견의 통일성이 엇보이나, 재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었다.

“기초는 조금 세밀하게 사회적경제 조직을 돕고 거드는 역할을 하고, 광역은 정책적 측면과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부족한 지역을 돌려주고 사람을 키워 보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N).

“광역은 전문적으로 분화해 가려 한다. 판로지원센터 등처럼”(S).

“진화하면 역할 나눠질 것이다. 광역은 결국 해산해야 할 것이나, 그러나 조정하는 것은 있어야. 시군 ‘행정’ 지원팀은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광역행정, 지방행정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 민간활동가, 센터인데 이들은 관리의 시각으로 접근하니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광역행정과 지방행정이 서로 연결이 잘 안 된다. 공무원끼리 잘될 것 같지만 문서 외에는 움직이지 않으며, 시·군행정의 담당직원교육, 사례부분 등을 광역행정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 체면도 서고, 시군센터가 시군행정을 지원하기도 쉽지 않은 반면, 광역센터가 시군행정을 지원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광역센터에서 민간자원과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를 풀

어가기 수월할 것 같다”(D).

“(재위탁 받을건가?) 매년 미지수다 ... 올해 큰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 곧 있을 전체 자채워크숍 상반기 중간평가에서, 센터가 법인설립 목적에 기여하는가? 센터별 독립방안과 자율적 운영방안 구상없이 위탁사업의 10급 공무원으로 일한다면, 그 센터를 맡음으로 인해 들어가는 부수적 운영비도 장난 아닌데, 굳이 이를 맡아가며 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꼭 말아야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닌가? 다른 곳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 논의 될 것이다”(N).

“사경센터는 평생 재위탁 받고 싶어 할 거다. 직장이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 재위탁뿐이 아니라 차라리 연구원 내부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다”(C)

“재위탁 받아 4년 정도 더하면 따복공동체아파트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겠다”(D).

이상의 코딩 패러다임의 결과 요소의 개념과 범주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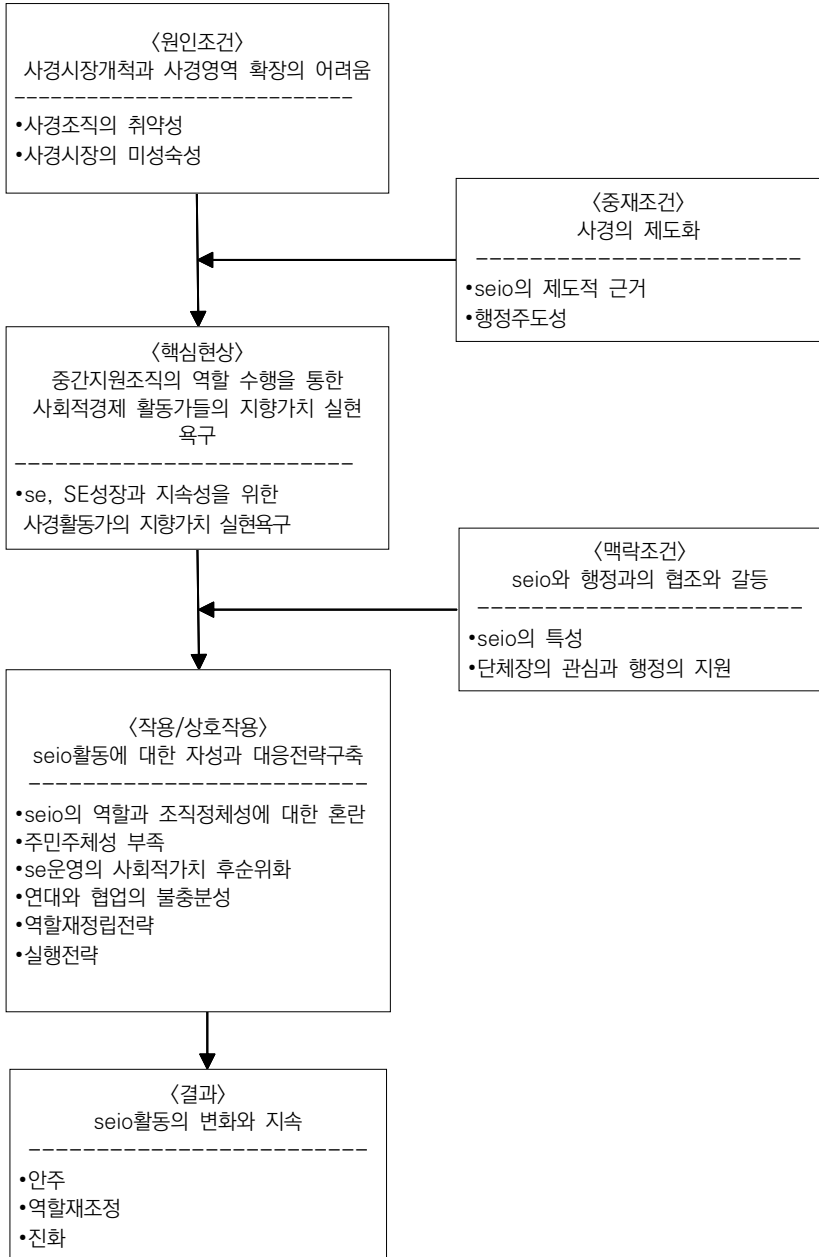
〈표 7〉 코딩 패러다임의 결과

코딩 패러다임 요소	범주	하위범주	개념
결과: seio활동의 변화와 지속	안주	현상유지	재위탁, 온갖 지원조직, 완장조직,
	역할재조정	seio 역할의 축소	위탁활동 시군행정 및 시군seio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사회 인재 발굴
		고유모델 확산	고유모델의 성공적 안착
	진화	탈위탁 seio활동 추구	전문사업체화, 민민위탁

7.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에 관한 코딩 패러다임

위에서 논의한 각 코딩 패러다임 요소의 범주를 중심으로 〈그림 1〉처럼 모형화 하면 아래 〈그림 2〉와 같이 제시될 수 있겠다. 자세한 설명은 위의 논의로 대체한다.

〈그림 2〉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에 관한 코딩 패러다임



8. 선택 코딩: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에 대한 논의의 통합과 함의

축 코딩의 결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지향까지 실현 욕구’라는 핵심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중심으로 위에서 코딩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지만, 위의 분석과정에 나타난 것처럼,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 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많이 나타난 충사넷과 따복을 중심으로 비교의 시각에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위의 코딩 패러다임 요소별 개념과 범주를 충사넷과 따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다음 표와 같이 재정리 해 볼 수 있다.

〈표 8〉 코딩 패러다임 요소별 충사넷과 따복의 공통점과 차이점

	원인조건	중재조건	핵심현상	맥락조건	작용/ 상호작용	결과
차이점 (충사넷)		사경조례	큰 사경 지향	모조직의 특성	조직정체성 혼란, 역할재정립	진화/ 현상유지
공통점	사경조직의 취약성 사경시장의 미성숙	행정주도성	사경에 대한 인식	사업수행의 경직성, 위탁	주민주체성 부족, se운영의 사회적가치 후순위, 연대와 협업의 불충분성, 실행전략	역할 축소 재조정
차이점 (따복)		사경조례 + 따복조례	작은 사경 지향	단체장의 관심과 행정의 지원	고유모델 개발	고유모델 확산

먼저, 충사넷과 따복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과 활동을 설명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스토리 라인을 구성해 볼 수 있겠다.

〈스토리 라인, 하나〉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은 사회적경제를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경제 운동, 사람중심 운동, 지역사회 변화 운동으로 인식하고, 사회양극화, 빈곤,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제도화에 동참하며,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장과 지속성을 위해,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그들의 지향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한 역할 수행 과정에 참여한 총사넷과 따복은 각각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정책사업을 위탁받게 되며 사업수행과정에서의 경직성을 경험한다. 또한 현장에서의 다양한 문제,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에 뛰어드는 사람이 부족하며,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뒤로 밀리고, 각 부처사업의 칸막이의 문제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뿌리에 근거한 갈등이 존재하는 등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두 조직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행전략을 구축한다. 그러한 프로그램들과 전략은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혼재로 나타났으나, 장차 그러한 프로그램과 전략이 작동하고 효과를 내면서 궁극적으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재조정되어 전문화 등으로 축소될 것이다.

둘째, 총사넷과 따복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다른 스토리 라인을 구성해 볼 수도 있다.

〈스토리 라인, 둘〉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은 사회적경제를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경제 운동, 사람중심 운동, 지역사회 변화 운동으로 인식하고, 사회양극화, 빈곤,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제도화에 동참하며,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장과 지속성을 위해,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그들의 지향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런데 총사넷과 따복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적 기반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 제도적 기반의 차이점은 두 조직이 속한 각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갖추었으나, 따복이 속한 경기도는 이에 더해 따복 관련 조례를 두고, 이 조례를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보다 우선하는데 있었다. 이 따복 조례의 제정은 단체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두 조직은 사회적경제의 지향성에서 서로 달랐다. 총사넷은 큰 사회적경제를 그린 반면, 따복은 작은 사회적경제를 그렸다. 따복의 이러한 지향은 따복 조례의 의도와 일치하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과정에 위탁과 그에 따른 사업수행의 경직성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의 지원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총사넷에 비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월하게 수행한다. 또한 따복은 총사넷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의 다양한 문제,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영역에 뛰어드는 사람이 부족하며,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가 뒤로 밀리고, 각 부처사업의 칸막이의 문제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뿌리에 근거한 갈등이 존재하는 등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두 조직은 모두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행전략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따복은 고유의 따복공동체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실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반면, 충사넷도 따복처럼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민간시민단체를 모조직으로 하고 있는 이유로 인해 위탁업무와 고유업무 수행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면서 조직의 정체성 문제가 불거지며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해 고민한다. 충사넷과 따복의 이러한 차이는 두 조직 모두 위탁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한 조직은 재위탁을 받아 자신의 모델이 안착되고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반면, 다른 한 조직은 재위탁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로 진화해 보려는 생각도 한다.

위에서 작성한 두 가지 스토리 라인 가운데 어느 스토리 라인이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을 더 잘 설명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복의 사례가 현재 다수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과 달리, 다른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행정의 지원 속에서 자신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향가치를 추구하며 고유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따복 사례는 특이한 사례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충사넷 역시 민간시민단체인 모조직을 기반으로 생겨나고 활동한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특이한 사례를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면, 위에서 공통점을 중심으로 작성한 스토리 라인이 더 일반적일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특이사례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어떤 조건일 때(under what conditions)’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특이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설명이 일반적 또는 공통적 특징에 근거한 설명을 보다 정교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이론적 관점도 발견할 수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과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합된 스토리 라인을 작성해 볼 수 있겠다.

〈통합된 스토리 라인〉

사회적 양극화, 빈곤, 일자리 부족, 사회적 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의 사회문제에 직면한 정부는 문제해결의 방안의 하나로써 외국의 사회적기업이라는 대안에 주목하고 이를 제도화한다. 제도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이미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으나, 이들의 규모, 경영상태, 활동영역 등의 상황이 취약한 점을 인지한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게 됨으로써 정부주도적인 속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기업으로 시작되었던 사회적경제가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의 각 부처는 다투어 유사

하지만 서로 다른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사업을 펼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도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원에 나서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모두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그대로 모방하기도 하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만의 특색을 담기도 한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와 사회적경제의 현장에서 모두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그 결과 중간지원조직의 제도화도 이루어지며,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중앙·광역·기초단위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이 앞을 다투어 설립된다. 한편 민간 영역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뿐 만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운동을 펼치며 활동하던 시민사회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사회적경제의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경제 운동, 사람중심 운동, 지역사회 변화 운동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아직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경제 영역이 성장하고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을 통해 자신들의 지향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는 사회적경제의 지향가치가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어떤 조직은 큰 사회적경제를 지향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조직은 작은 사회적경제를 지향하기도 한다.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과 운영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중간지원조직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적 사회적경제의 속성으로 인해 대체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위탁받는 중간지원조직이 다수이다. 본 연구의 주요 사례인 충사넷과 따복은 모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을 위탁받아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은 역할 수행 과정에 모두 공통적으로 위탁으로 인한 사업수행과정에서의 경직성을 경험하며,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영역에 뛰어드는 사람의 부족 문제,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뒤로 밀리는 문제, 각 부처사업의 칸막이의 문제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뿌리에 근거한 갈등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행전략을 구축한다.

그런데 이 때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과 활동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 간에 서로 다른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간지원조직의 지향가치와 이러한 지향가치를 실현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조건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활동가의 지향가치로 큰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는 가치와 작은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는 가치가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지향가치의 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첫째,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요인(본 연구의 따복의 경우 따복 조

례), 둘째, 중간지원조직의 특성(본 연구의 층사넷의 경우 모조적인 민간시민단체의 특성), 셋째,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따복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가 발견되었다. 즉 이러한 지향가치와 조건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층사넷과 따복은 모두 위탁을 받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층사넷은 민간시민단체인 모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위탁으로 인한 조직운영의 고민 즉 조직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재위탁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반면, 따복은 그러한 혼란을 겪지 않음은 물론 고유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안착·확산시키고자 하는 의욕까지 보이고 있다. 그런데, 따복이 위탁과 관련한 문제를 심각하게 겪지 않은 것은 단체장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그의 의욕이 반영된 중간지원조직의 제도화(즉, 따복조례)가 위탁을 받는 주체의 지향가치(즉 작은 사회적경제 지향)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에 동의함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따복이 고유 모델의 개발과 확산 의욕을 보이는 것도 따복이 지향하는 작은 사회적경제의 구축이 큰 사회적경제를 구축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단체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도 보여진다.

이상의 통합된 스토리 라인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에 관한 실천적 함의를 끌어 낼 수 있어 보인다. 단체장 우위의 특성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부 주도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영역이 지역에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체장과 중간지원조직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단체장은 자신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향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한 후 자신의 지향가치에 동의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현실화 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 중간지원조직을 적극적으로 찾은 다음에는, 비록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더라도 이들을 지속적으로 믿고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역으로 중간지원조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그 과정은 조금 더 어려워 보인다. 중간지원조직은 단체장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호의적일 것이라고 미리 전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행정주도적인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가 사회적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 사회적경제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이기까지 할 수 있는 단체장이 호의적으로 변하고 이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며 제도적 준비를 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먼저 사회적경제의 실

현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가지는 지향가치를 보다 명확히 하고(그것이 큰 사회적 경제든 또는 작은 사회적 경제든 관계없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한 효과를 단체장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장과 관련하여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이들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간지원조직 가운데서도 그 중요성이 큰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가 거의 없다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어떤 일을,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가?’ 라는 연구 질문을 던지고, 이를 밝히기 위해 4개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을 선정하여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따라 이들의 역할 수행을 분석하였다. Strauss와 Corbin의 코딩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핵심현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지향가치 실현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중심으로 핵심현상의 원인, 중재조건, 맥락조건을 살펴보면서, 중간지원조직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이슈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그 대응에 따른 결과를 밝혀냈다. 또한 코딩 패러다임 모형의 최종 요소인 선택코딩에서는 연구대상 사례에서 발견된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각각 스토리 라인을 구성해 보았다. 특히, 새로운 이론적 관점의 발견을 위해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이 어떤 조건에서(under what conditions)에서 달라질 수 있는지에 주목한 결과,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지향가치와 지향가치의 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 세 가지, 즉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요인(본 연구의 파복의 경우 파복 조례), 중간지원조직의 특성(본 연구의 충사넷의 경우 모조직인 민간시민단체의 특성), 그리고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통합된 스토리 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과 관련해, 단체장과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에 관해 기존의 파편적 연구들을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봄으로써, 보다

통합적이고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였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 연구 방법의 적용에 있어 4개의 사례 선정에 그쳐 연구대상의 수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새로운 이론적 관점도 두 가지 사례에 근거하여 도출 된 것이라 재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보다 많은 사례를 통해 본 연구에서 발견한 사항에 대한 재검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권선필. 2006.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통해 재구성해 본 지방정부 하급 공무원의 혁신수용에 관한 해석과 함의.” 《한국사회의 행정연구》, 16(4): 45-67.
- 권용덕·김덕주. 2011. “경남사회적기업의 운영 및 생태계 분석.” 《사회적기업연구》, 4(2): 107-134.
- 김재선. 2012. “사회적경제의 중간지원기관 사례연구-풀뿌리사람들의 사례.” 《충남사회적경제 연구회 자료집》,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1-116.
- 김재현·태유리·이효정·임윤정. 2013.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한·정홍상. 2012. “소방 공무원의 직무수행태에 대한 근거 이론적 분석.” 《정부학연구》, 18(2): 211-240
- 기영화·김승현·정남숙. 2013. “성미산 지역공동체 커뮤니티엘빙의 패러다임 모형분석: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한국행정학보》, 47(1): 295-320
- 마상진. 2011.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 박석희·남지원. 2009. “행정연구에서의 해석적 연구과정의 탐색.” 《정부학연구》, 15(1): 215-245.
- 박세훈. 2015.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특성 연구: 정부-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도시행정학보》, 28(3): 75-104.
- 박해금·배은석. 2015. “사회적 경제 조직 인지도 및 이용의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부산광역시 5개 자치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연구》, 8(2): 287-216
- 배진영. 2010.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실체와 평가》. CFE Report. 자유기업원.
- 엄형식. 2008.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서울: 실업극복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 엄형식·마상진. 2011.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현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

- 서정민. 2011.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과제." 《제2차 농어촌 사회적기업 활성화 포럼 자료집》. 지역재단: 5-25.
- 손을출. 2014.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신명호. 2008.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한국의 사회적경제연구 3차모임 발제와 토론문》.
- 오내원·마상진·김광선. 2010.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단이. 2013.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제공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의 갈등경험 연구-한국 사회적기업의 1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3): 161-188.
- 오단이·정무성. 2015.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한 사회적기업가가 바라본 한국 중간지원조직 연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1): 189-212.
- 유민봉·심형인. 2011. "공무원이 조직생활에서 경험하는 체면현상과 행위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적용하여." 《한국행정학보》, 45(1): 199-225.
- 윤견수. 2013. "경험의 의미와 질적 연구의 연구과정: 근거이론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2): 163-200.
- 이강익. 201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의 위상과 역할." 《전국 사회적경제 한마당 in 충남, 사회적경제 한마당 학술포럼 자료집》.
- 이기태·하현상. 201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25(1): 455-490
- 이도희·김현미. 2013. "근거이론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운영 인식에 대한 연구." 《경영경제연구》, 35(2): 141-168.
- 이석민·원시연. 2012. "시장형 노인일자리아업에 대한 질적평가: 발전적 평가이론과 근거이론적 방법 접근." 《한국행정학보》, 46(4): 207-232.
- 이영범·박성우·남승연·정무권. 2012. "근거이론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지속발전 모형에 대한 연구: 서울지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4): 355-387.
- 이영철. 2014. "근거이론의 근거에 대한 음미: 방법론과 방법."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1): 187-214.
- 이은애. 2011. "충남형 사회적 기업 심층사례조사: 결과분석 및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회》.
- 이자성. 2011.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현황과 NPO역할에 관한 고찰: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NGO연구》, 7(1): 73-107.

- 이정현. 2015. “한국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구조 현황-기업규모 및 연령효과와 인증취소 영향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8(1): 115-139.
- 이준호. 2015. 《마을기업 육성 관련 법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이차희·탁영란·김민서·손용훈. 2014. “농촌체험관광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양평군·이천시 농촌나드리 비교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20(3): 75-88.
- 장영란. 2011.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원봉. 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나눔의 집.
- 장원봉·노대명. 2008.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한국의 사회적경제연구 2차모임, 발제와 토론문》.
- 정수화·이한주·이화진. 2011.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경기복지재단.
- 제주발전연구원. 2012.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수립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조상미·박규범. 2013.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2(3): 323-345.
- 조상미·정선희·이재희·하정은. 2012. “비영리 사회적기업 변화경험 및 운영에 관한 탐색적 사례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4(2): 143-178.
- 조원혁. 2013. “일선경찰관의 재량행위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한국행정정보》, 47(3): 389-423.
- 지역재단. 201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과제.” 《제2차 농어촌 사회적기업활성화 포럼 자료집》. 지역재단.
- 최홍석·홍성만·주경일. 2003. “사회적 갈등의 근거이론적 이해: 담건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 37(4): 169-191.
- 한승주. 2010. “성과급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 근거이론의 적용.” 《한국행정정보》, 44(4): 29-58.
- 허준영·권민영·조원혁. 2015.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이 경험하는 행정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한국행정정보》, 49(3): 127-159.
- Ashman D. L. Carter, J. Goodin, D. Timberman. 2011.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 Partners in strengthening local civil society.” *Management Systems International Discussion paper*.
- Brown, L. D. and A. Kalegaonkar. 2002. “Support organizations and the evolution of

- the NGO sector."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1(2): 231-258.
- Caille, A. et al., 2003. *L'Alter-Économie*, Paris: MAUSS, 김신양 편역(2005). 《다른 경제》. 서울: 실업극복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 Charmaz, K. 2014.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 Frumkin, P. 2002. *On Being Nonprofit: A Conceptual and Policy Primer*.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 Glaser B. G. (1992). *Basic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Emergence vs. Forcing*. Mill Valley: Sociology Press. 김인숙·장혜경 역(2014). 《근거이론 분석의 기초: 클레이저의 방법》, 서울: 학지사.
- Glaser, B. G. and A. Strauss. 1967.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Aldine.
- Howells, J. 2006. "Intermediation and the role of intermediaries in innovation." *Research Policy*, 35: 715-728.
- Kerlin, J. 2006. "Social 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Understanding and learning from differences." *Voluntas*, 17: 247-263.
- Klerkx, L and C. Leeuwis. 2007. "Matching demand and supply in the agricultur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periences with innovation intermediaries." *Food Policy*, 33: 260-276.
- Polanyi, K.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Beacon Hill: Beacon Press.
- Strauss, A. and J. Corbin.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Szanton, P. L. 2003. *Toward more effective use of intermediaries*. Foundation Center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5.
-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3.
-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2.
- 《협동조합기본법》. 2012.